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추경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2847

발의연월일: 2021. 10. 15.

발 의 자: 추경호 · 이종배 · 엄태영

김예지 • 이주환 • 성일종

조명희 · 김상훈 · 김선교

김용판 · 윤창현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 써 발생한 소득 또는 대토보상 받는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. 또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공장 또는 물류시설을 이전해야 하는 경우에도 과세 이연 및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등 강제적 사업 이전으로 인한 손해를 지원하기 위한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.

그런데 이러한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에 관한 과세특례는 2021년 12 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임.

이에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례 조항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함(안 제77조, 제77조의2, 제85조의7 및 제85조의9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2021년 12월 31일"을 "2024년 12월 31일"로 한다.

제77조의2제1항 중 "2021년 12월 31일"을 "2024년 12월 31일"로 한다. 제8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2021년 12월 31일"을 "2024년 12월 31일"로 한다.

제85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2021년 12월 31일"을 "2024년 12월 31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7조(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	제77조(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
한 양도소득세의 감면) ① 다	한 양도소득세의 감면) ①
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	
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	
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	
인정고시일(사업인정고시일 전	
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)	
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	
득한 토지등을 <u>2021년 12월 31</u>	<u>2024년 12월 31</u>
<u>일</u>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	<u>일</u>
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	
득세의 100분의 10[토지등의	
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	
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	
서는 100분의 15로 하되, 「공	
공주택 특별법」 등 대통령령	
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	
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	
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	
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	
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	
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	
100분의 30(만기가 5년 이상인	

경우에는 100분의 40)]에 상당 하는 세액을 감면한다.

- 1. ~ 3. (생략)
- ② ~ ⑨ (생 략)

제77조의2(대토보상에 대한 양도 소득세 과세특례) ① 거주자가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| 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 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 고시일(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)부 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 한 토지등을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 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토지등의 양도 대금을 같은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 성한 토지로 보상(이하 이 조 에서 "대토보상"이라 한다)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 액을 감면받거나 양도소득세의

· 1. ~ 3. (현행과 같음)
② ~ ⑨ (현행과 같음)
제77조의2(대토보상에 대한 양도
소득세 과세특례) ①
2024년 12월 31일-

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.

② ~ ⑤ (생 략)

제85조의7(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| 저 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) ① 「공익사업을 위 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| 에 따른 공익사업 의 시행으로 해당 공익사업지 역에서 그 사업인정고시일(사 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로 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(공장을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미만 가동한 경우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보유한 토 지를 포함한다)을 공익사업 시 행지역 밖의 지역(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공익사업 지 역 안의 토지를 사업시행자로 부터 직접 취득하여 해당 공장 의 용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공익사업 시행지역을 포함 한다)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

	2	~	5	(현	년 항	기과	· 깉	같음)		
제	852	준의	7(-	공인]시	납	을	위	한	수용	}_
	등	케	따흔	<u>=</u>	공	장	Ò	l 전	에	대한	}-
	과기	네특	·례)		1)						_
											_
											_
											_
											_
											_
											_
											_
											_
											_
											_
											_
											_
											_
											_
											_
											_
											_
											-
											_
											_
											_

하는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그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(공장의 대지의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다.

1. • 2. (생략)

②·③ (생 략)

제85조의9(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) ①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공익사업지역에서 그 사업인정고시일 (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)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(이하이 조에서 "물류시설"이라 한다)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

2024년 12월 31일
<u>.</u>
1.•2. (현행과 같음)
②・③ (현행과 같음)
제85조의9(공익사업을 위한 수용
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
한 과세특례) ①
안 파세득데/ ①

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물류시설의 대지 또는 건물을 그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20 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익금에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.

1. • 2. (생략)

②·③ (생 략)

<u>20</u>
24년 12월 31일
<u>,</u>
1.・2. (현행과 같음)
②・③ (현행과 같음)